



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런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

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농수산물 보관을 위한 건축물 설치

- 농사용 창고, 농막, 관리사 등 (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함)
※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"농지원부"

주택(단독주택) 신축
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"대지"인 토지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
-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경우, 이축에 해당

주택을 음식점으로 변경 (용도변경)

-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정, 300㎡이하 용도변경 가능

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형질변경

- 논·밭에 농사를 위해 성토·객토 하는 행위 (50cm 이상)
- 농로·임도·사도를 설치하는 행위
-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(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한함)
- 나무를 베어내는 행위
- 지반의 붕괴 등 재해예방을 위해 축대·옹벽 등을 설치하는 행위
- 논을 밭으로,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행위 (지목변경)

이밖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할 경우 할 수 있는 행위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| 건축과 ☎ 519-4586~7

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주택 및 소득기반시설 신축·증축

-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가주택 또는 주택
-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소매점

구역 내 농업경영을 위한 시설 건축

- 농업용 창고, 잠실(蠶室), 버섯재배사, 온실 등

오염물질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아지는 건축물의 용도변경

- 휴게음식점, 종교집회장 → 소매점
- 소매점, 사무소 → 창고, 마을회관 등

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

-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식재
-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·벌채
- 농업 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 개량 등을 위한 복토 등의 행위
- 보호구역에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단순 경지 정리행위
-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

상수원보호구역 내 문의 | 환경위생과 ☎ 519-4387



주민의 주민 지리로는 **금정**

www.geumjeong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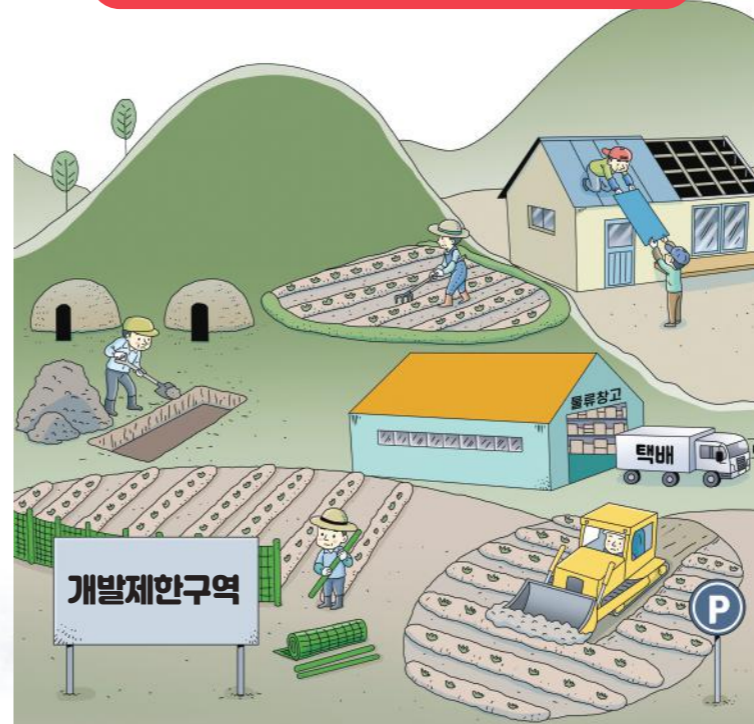
개발제한구역



불법행위 예방을 위한

유형별 (건축물·형질변경) 행위가능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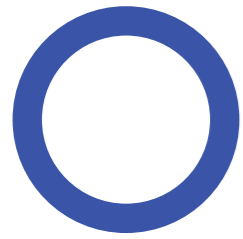
개발제한구역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



부산광역시 금정구
GEUMJEONG-GU, BUSAN METROPOLITAN CITY

행위허가(신고) 절차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





개발제한구역 이런 행위는 허가(신고)없이 할 수 있습니다!

주택 등을 관리하기 위한 행위

- 지붕개량, 외장을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
- 내벽 및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등
- 주택의 일부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 건조실로 사용하는 경우



농사를 짓기 위한 행위

-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(채소, 원예, 버섯재배 등)
-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·밭을 갈거나 50cm 이하 성토
-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 헨스 등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



-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



농사용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지어요!

- * 아래 구조와 다를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목이 전·답인 토지
- 골조는 목재, 철제, PVC
- 기초는 골조 고정을 위한 가로, 세로, 높이 40cm 이하 콘크리트 타설
- 바닥은 흙 또는 부직포와 유사한 것
- 출입문 이외 그 밖의 부분은 비닐



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
구청으로 문의하세요!
건축과 ☎ 519-4586~7



개발제한구역 이런 행위는 허가(신고)없이 하시면 안됩니다!

논·밭·임야를 훼손하는 행위

- ×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
- × 컨테이너, 건설용 자재 등 각종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
- × 임야를 논·밭으로 사용하는 행위
- × 나무를 벌목하는 행위
- × 도로를 개설하는 행위



허가없이 건축하는 행위

- × 주택, 축사, 농사용 창고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행위



농사용 창고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

- × 주거 목적의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- × 음식점, 휴게점 등 영업하는 행위
- × 물류창고로 이용하는 행위



주택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

- × 음식점, 휴게점 등 영업하는 행위



불법행위는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
받을 수 있습니다!